상 담

산재보험의 법률상담

박 필 수 우리 협회 고문

Q 가정주부 근로자가 작업중 머리가 아프다고 하여 병원에 후송 가료중 뇌혈색증으로 사망한 경우(업무상)

A 가사노동의 부담을 지고 있는 가정주부 생산사원이 켄베이어의 작동에 맞추어 작업을 하여야 하는 반복적인 조립업무를 작업정원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를 하면서 수행하여 왔다면 그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압박감이 누적되었다고 할 것이고, 망인의 기존질환인 심판막협소증으로 인하여 뇌혈색증으로 발전하게 된 정확한 의학적 경로가 밝혀지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망인의 직무로 인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압박감으로 인하여 기존질환인 심판막협소증이 뇌혈색증으로 발전하게 되었거나 혹은 적어도 위 발전과정이 급속화되어 뇌혈색증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에 해당한다(대법 1993.11.9,93누 13179).

Q 중형차 운전기사가 퇴직후에 발병한 뇌출혈인 경우(업무상)

A 11톤 탱크로리 운전기사로 근무하던중 눈이 침침하여 지고 심한 두통과 현기증 등으로 회사에 용양신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집에서 3일간 휴식을 취하였으나 호전되지 아니하고 계속되는 두통, 구토, 시력장애 등을 견디지 못하여 위 증세의 치료를 위하여 부득이 자진사퇴하고 한약 등을 복용하며 치료를 하다가 자택에서 잠자던 중 의식을 잃어 쓰러져 병원에 후송되어 진단을 받은 결과 그 병명이 우측 시상부출혈에 의한 뇌출혈로 판명된 경우, 위 근로자가 뇌출혈의 발병 이전 회사에 재직할 때부터 열악한 근무환경에서의 무리한 운행과 누적된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그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질병(중부증 또는 구완와사증 등)의 초기증상들을 이미 가지고 있었거나 근무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한 증상이 악화되었는 데도 회사에서 요양을 시켜주지 아니하여 이를 견디지 못하고 퇴직후 위 증상을 주된 원인이 되거나 그의 자연적 발전으로서 뇌출혈이 초래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고, 가사 뇌출혈의 주된 발생원인이 근로자의 담당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재직시의 업무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뇌출혈의 발병원인이 된 초기증상들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뇌출혈

은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업무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그 원인이 된 이상 그 발병시기가 업무수행중에 발병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서울고법 1993. 12.3,92 구 7810).

Q 자동차검사원이 취침중 가슴이 답답하고 통증으로 인근 병원으로 후송 도중 발작성 심실세동으로 사망한 경우(업무상)

A 망인은 평소의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근로환경 특히 사망 무렵 감사에 대비한 수개월간의 계속된 연장근무와 사망 직전일 상사의 질책으로 인한 충격 등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와 과로가 누적된 나머지 기존의 특별한 질병없이 위 사인이 된 발작성 심실세동을 유발하였거나 사망전에 확인되지 아니한 심장질환이 있었는데, 위와 같은 과로 및 스트레스가 가중된 나머지 위 발작성 심실세동이 초래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또한 발작성 심실세동의 주된 발병원인이 그의 담당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평소 건강하다고 보여지는 사람도 심장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누적된 업무상 과로과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이 되어 위 사인이 된 질병이 주된 발병원인인 심장계통의 질환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될 수 있으므로, 이는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질병에 해당한다(서울고법 1993.11.12, 93 구 18459).

Q 중기차량 운전기사가 회사의 공사현장 직원숙소에서 몸의 이상을 호소하여 병원에 후송되어 뇌색경증, 좌측 반신마비로 진단된 경우 (업무상)

A 근로자는 발명 당시 52세가 넘어 육체적·정신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다소 무리로 보여지는 나이로서 발병 전해에 소정의 근로시간외에 많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를 하여 왔고, 더욱이 평소 고혈압의 지병이 있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근로자의 나이와 지병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덤프트럭 및 레미콘 차량의 운전업무는 근로자에게 상당한 육체적 과로와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는 위 뇌경색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거나 또는 그 악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근로자가 앓고 있는 뇌경색의 질병은 요양보상이 대상이 되는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질병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서울고법 1993.12.30, 93 구 20377).

Q 콜택시 운전기사가 영업운행중 갑자기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후송 도중 심관상동맥경화 및 협착으로 사망한 경우(업무상)

A 망인이 수행하는 운전업무는 격일제로 계속적이고 장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상당히 고된 것이어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누적되므로 말미암아 심관상동맥경화 및 협착이 유발되었다고 보여지고, 위 증상이 업무로 인하여 유발된 것이 아니고 기존질환이라 할지라도 사망하기 10일전에 콜택시 운행중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경추부염좌상을 입고 2주간의 안정가료 및 약물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아 충분한 휴식이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사망 5일전부터 회사의 지시 내지 요청으로 무리하게 업무를 담당함으로 말미암아 피로가 급격히 가중됨으로써

기존의 심관상동맥경화 및 협착질환을 급격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그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재해에 해당한다(대법 1994.1.11, 93 누 16730).

Q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업무중 갑자기 복통과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하여 병원에 후송 입원가료중 선행사인 해리성 동맥류, 직접사인 심폐정지로 사망한 경우(업무상)

A 망인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입사할 당시 이미 고혈압은 물론 그 합병증인 동맥경화증도 상당히 진행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쾌적한 환경속에서 육체적·정신적 안정을 취하여야 하였음에도 위 아파트 경비원으로 입사한 이래 계속하여 열악한 근무환경속에서 휴일도 없이 1일 24시간 이상 격일제로 경비원으로 종사하면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누적되었고, 여기에 망인의 나이와 기존의 질환으로서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고혈압증과 동맥경화증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망인의 사인인 해리성 동맥류는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기존의 질환인 고혈압과 동맥경화증을 악화시킴으로써 초래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그의 사망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고, 가사 해리성 동맥류의 주된 발생원인이 망인의 담당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로가 위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이를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것으로 보여지므로 그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함이 상당하다(서울고법 1994.2.18, 93 구 20988).

Q 노조전임자가 노동조합업무수행중 쓰러져 뇌지주막하출혈, 전교통성뇌동맥류, 뇌경색증으로 진단된 경우(업무상)

A 노동조합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고, 재해발생 당시 근로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질병이 노동조합업무수행중 육체적·정신적 과로로 인하여 발병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소정의 업무상 질병으로 보아야 한다(다만, 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나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또는 사용자의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노동조합활동중에 생긴 재해 등은 이를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 1994.2.22, 92 누 14502).

Q 건설공사현장의 경비원이 근무중 쓰러져 대동맥기시부의 박리성 동맥류 파열에 의한 심탐포나데로 사망한 경우(업무상)

A 망인은 원래 고혈압 및 동맥경화로 인한 박리성동맥류의 기초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망인이 비교적 근무하기에 수월하고 단순한 업무인 건설공사현장의 출입차량통제 및 경비업무 등에 종사하고 있었지만 61세의 고령인 점과 매일 12시간의 장시간근로 등을 고려하여 보면 과로함으로써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누적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인인 박리성 동맥류파열에 의한 심탐포나데는

위와 같은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위 기존의 질환인 고혈압 및 동맥경화로 인한 박리성동맥류를 악화시킴으로써 초래된 것으로 보여져 그의 사망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가사 위 박리성 동맥류의 주된 발생원인이 망인의 담당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가 위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이를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것으로 보여지므로 그의 사망은 업무상재해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서울고법 1994.5.19, 93 구 30565).

Q 회사 거래처 관계자를 접대하고 저녁늦게 귀가하여 자택에서 잠을 자다가 심장마비(추정)로 사망한 경우(업무상)

A 회사 건설사업부 책임자로 근무하던 망인은 평소 업무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누적되어 왔고, 특히 사망 전일 준공검사문제의 원만한 수습을 위하여 발주처측과의 협의·접대 등 망인의 업무와 관련된 일련의 원거리 출장으로 과로에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겹쳐 기존질병인 동성서맥 등의 심질환이 갑자기 악화되어 심장마비를 유발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할 것이니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스트레스가 기왕증을 악화시켜 사망의 주된 원인을 유발시킨 이상 망인의 사망은 그 사망장소가 어디 이건 간에 업무상재해로 인정함이 옳다(서울고법 1994.5.13, 93 구 19094).

Q 건설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던 자가 골프접대중 쓰러져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업무상)

A 업무상 재해가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사망인 경우에는 업무와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질병의 주된 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돌연사의 경우는 그 유인의 외상, 과로, 정신적 충격 등으로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이 있는 경우와 청장년급사증후군처럼 사후검사에서도 사인이 될 만한 병변의 입증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사전 및 사후 검사에서도 사인이 될 만한 병변이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 각 유인은 아직 밝혀지지 아니한 그 어떠한 질병을 급속히 유발하였거나 또는 악화시킨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라면 업무와 사망과의 사이에 인관관계를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건설회사의 토목이사인 40세의 신체건강한 남자가 잦은 공사현장출장 등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회사에서 경비를 지출하고 근무일인 평일에 평소 회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새로운 공사수주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을 접대하기 위해 골프를 치다 심장마비로 돌연사했다면 이는 업무수행중에 발생한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서울고법 1994.6.16, 93 구 25785).

Q 회사출근중 반의식불명상태로 귀가하여 병원에 후송·가료중 선행사인 고혈압 및 뇌졸증, 중간선행사인 폐혈증(추정), 직접사인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경우(업무상)

A 망인은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재해발생 약 2년전에 고혈압에 의한 뇌출혈로 6

개월동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치료를 받았던 자로서 동 산재발생 이후 복직하면서 운전기사직에서 창고직으로 직종전환하고 근무장소도 평택사업소에서 부평사업소로 옮겨 근무하던 중 회사에 출근한다고 나갔으나 회사를 찾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장시간 헤메다가 반의식 불명상태로 귀가하여 병원에 후송·가료중 사망한 경우로써, 망인은 업무상 질병인 고혈압 및 뇌출혈로 인하여 기억력상실, 지남력혼돈 등의 정신과적 후유장해를 갖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 요양종결에도 불구하고 고혈압 등의 최초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였거나 자각할 수 없는 잠재적 질환으로 남아 있는 정상적이 아닌 건강상태에서 부평사업소로의 복직발령으로 혼잡하고 먼 출·퇴근경로(면목동에서 출·퇴근)에서 육체적 과로가 누적되고 창고직으로 직종이 전환되었음에도 그나마 그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됨에 따라 체내의 저항력이 급속히 떨어진 상태로 발병당일 하루종일 정처없이 헤매다가 패혈증의 원인이 되는 세균독소에 감염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재해로 인정함이 상당하다(서울고법 1994.7.22, 93 구 30657).

Q 노조전임자가 노조업무수행차 출장을 갔다오던 중 우안중심성 망막염의 질병이 발생한 경우(업무상)

A 노조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한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인하게 된 것이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며, 재해발생 당시 근로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질병이 노동조합업무수행중 육체적·정신적 과로로 인하여 발병된 것이라면 그 업무가 사용자의 사업과 무관한 대외활동 또는 사용자의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 이후의 활동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시정이 없는 한,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소정의 업무상 재해로 보아 동법 소정의 보험급여 지급대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위 노조전임자가 전국대위원회임시대회 개최준비에 따라 밤늦도록 비상근무를 하였고 이어서 조직강화활동을 위한 출장업무차 지방본부 지부장회의에 참석하여 대책을 숙의한 뒤 밤늦은 시간에 서울행열차로 귀경하다가 그동안 겹친 과로로 중심성 망막염이 발생하였다면 위 질병의 발병은 산업재해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 1994.8.23, 94 누 4264).

Q 노조전임자가 노조업무수행중 뇌지주막하출혈로 쓰러진 경우(업무상)

A 재해발생 당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노조전임자라 하더라도 그 노조업무와 회사 노무관리업무 사이의 관련성, 노조업무를 담당하게 된 경위, 노조전임자의 역할과 지위 등을 가려 사용자와 대립적 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한 그 노조업무수행중의 재해발생시 노조전임자도 일반근로자와 다름없이 보험급여의 수급권자로 보는 것이 근로계약관계에서 생기는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할 것인 바, 노조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업무를 면하고 노조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며, 노조전임의 사유가 끝나면 원직에 복귀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의 단체협약상 제규정에 비추어 보면 재해발생 당시 근로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고, 노조전임자의 질병이 노동조합업무수행중 육체적·정신

적 과로로 인하여 발병된 것이며, 달리 질병이 노조전임자가 회사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나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중에 생긴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소정의 업무상 질병으로 보아 동법 소정의 보험급여지급대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서울고법 1994.7.14, 94 구 8015)

※ 참고: 이 판례는 대법원(대법 1994.2.22, 92 누 14502)에서 파기환송한 사건에 대한 판례임

Q 경비원이 근무를 마치고 퇴근길에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우기저핵부 뇌실질내출혈, 고혈압, 좌반신마비로 진단된 경우(업무상)

A 근로자는 격일제근무자로서 근무시간내내 출입자와 우유운송차량을 일일이 확인하고 통제하여야 하며, 특히 야간에는 넓은 공장 전체를 5회 정도 순찰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우유운송차량이 계속 출입하고 각 우유대리점에서 출고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가 수시로 걸려오기 때문에 야간에도 쉴 틈이 거의 없을 정도인 데다가 격일제근무로 인하여 생체리듬이 깨어져 평소 스트레스와 피로가 누적되어 오던 중 재해발생 전날 아침에 출근하여 다음날 아침까지 24시간을 근무하고 나서 퇴근을 하던 중에 쓰러져 고혈압으로 인한 우기저핵부 뇌실질내 출혈이 발생하여 하반신마비가 초래한 것인 바, 위 근로자는 평소 소혈압의 기초질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발병 당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실질내출혈이 야기되어 하반신마비가 발생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질병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서울고법 1994.6.3, 93 구 7855).

Q 작업도중 갑자기 가슴에 답답함과 통증을 느끼어 병원으로 후송가료중 선행사인 급성심근경색증, 직접적인 심인성 쇼크로 사망한 경우(업무상)

A 신발창제조회사의 자동계량기 운전공인 근로자가 약간 비만한 체질에다가 재해발생 한달전부터 대화동 공장과 신탄진 공장을 오가며 고무냄새가 심하게 나는 환경에서 근무하여 온 외에 주·야간이 뒤바뀌는 근무형태에서 오는 피로와 고무냄새에 대한 혐오감, 불량자동계근계량기에 기한 작업능률저하에 따른 불안·초조감 등으로 초래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근경색증이 유발·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른 것이라 볼리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고, 결국 망인의 사망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대전고법 1994.9.2, 94 구 307).

작업복장은 적절한 것을 착용합시다

- 작업에 적합한 복장일 것
- 간소하고 몸에 잘맞는 것
- 옷자락·옷소매·바지가 너풀거리지 않을 것
- 작업에 적절한 작업화를 착용할 것
- 청결을 유지할 것